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686

2022. 3. 22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2. 3. 10.(이창희 의원 등 6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2. 3. 11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2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시민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봉사단체 임무 수행에 관한 경찰서 협의 주체 정비(안 제3조)
- 시민안전 봉사단체 경비 지원 항목 추가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구)

-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의 역할인 임무수행에 관한 협의주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아울러,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고 있는 시민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여 봉사단체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